

2021년 4월 1일 이후
보험적용개시용

A타입
[사망보험금 최고 2,000만엔]
(특약 있음/없음 겸용)

뜻하지 않은 부상에 대비한 보험

2021년도판

학연재("Gakkensai") 안내 ("Gakkensai"는 학생교육재해상해보험의 약칭입니다.)

일본 내외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연구활동 중에 생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상처)를 입었을 경우.
이 보험의 상해는 '신체 외부로부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적으로 우연히 흡입·흡수 또는 섭취했을 때 급격하게 발생하는 중독증상' 및 '일사 또는 열사로 인한 신체장애'를 포함합니다. '병'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류

1 교육연구활동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연구활동 종이란?
수업을 받는 동안, 학교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등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① 정규과정 중

강의, 실험, 실습, 연습 또는 수업을 받는 동안(통신 학생은 면접 수업을 받고 있는 동안), 지도교원의 지시에 따라 연구활동을 하는 동안※1.

② 학교행사 중

학교가 주최하는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졸업식 등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각종 학교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③ ①②④ 이외에 학교시설 내에 있는 동안

학교가 교육활동을 위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학교시설 내에 있는 동안※2.

④ 과외활동(클럽활동) 중

학교의 규칙에 따라 소정 수속을 통해 학교가 인정한 학내 학생단체의 관리하에 실시하는 문화·체육활동을 학교시설 밖에서 실시하는 동안※3.

※1 사적인 상황에서 이들에 종사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2 기숙사에 있는 동안, 학교가 금지한 시간·장소에 있는 동안, 학교가 금지한 행위를 하는 동안을 제외합니다.

※3 위험한 스포츠를 하는 동안, 학교가 금지한 시간·장소에 있는 동안, 학교가 금지한 행위를 하는 동안을 제외합니다.

2 통학 또는 학교시설 이동 중의 사고※4에 대비하기 위해

① 통학 중

학교 정규과정, 학교행사 또는 과외활동(클럽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5으로 주거※6와 학교시설을 왕복하는 동안

자전거로 통학 중에 도로 턱에 걸려 넘어져 탈구상을 입었다.

② 학교시설 등 상호 간 이동 중

통학 중과 같은 목적·경로·방법※5으로 학교시설 등 상호 간을 이동하는 동안



3 임상실습 중의 사고※7에 대비하기 위해

접촉 감염증의 예방 조치를 받은 경우

의료실습 중에 이미 사용한 주삿바늘에 손가락을 찔렸다.



※4 통학 중 등 상해위험담보특약(약칭 '통학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합니다.

※5 학교가 금지한 방법을 제외합니다.

※6 사회인 입시를 거쳐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근무처를 포함합니다.

※7 접촉감염예방보험금지급특약(약칭 '접촉감염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합니다.

가입 대상자

학교교육법 등에 규정된 대학 등 중, (공익재단법인) 일본 국제교육지원협회 찬조회원인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재적한 학생에 한합니다.

보험 기간

4월 입학생

4월 1일 오전 0시부터 소정의 졸업연도 3월 31일 오후 12시까지

9월 입학생

9월 1일 오전 0시부터 소정의 졸업연도 8월 31일 오후 12시까지

10월 입학생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소정의 졸업연도 9월 30일 오후 12시까지

※보험 개시일 전날까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분의 입의기입(학생이 기입을 결정) 보험기간은 보험료를 지불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각 종료일까지입니다. 전원기입의 내용은 P4를 참조하십시오.

1. 보험료 일람

보험기간	기본			특약 (*1)		
	주간부	야간부	통신교육	통학증등상해 위험담보특약		접촉감염예방 보험금 지급특 약
주간부· 야간부		신교육				
1년간	650엔	100엔	100엔	350엔	40엔	20엔
2년간	1,200엔	200엔		550엔		40엔
3년간	1,800엔	300엔		800엔		50엔
4년간	2,300엔	400엔		1,000엔		70엔
5년간	2,800엔	500엔		1,250엔		80엔
6년간	3,300엔	—		1,400엔		100엔

※연도 도중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1년간 단위로 합니다.

*통학중등상해위험담보특약에서 야간부의 경우 6년간에 대한 설정은 없습니다.

2. 보험금의 종류와 금액

(1) 사망보험금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한 180일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상범위	지급보험금
[정규과정][학교행사 중]	2,000 만엔
[정규과정 · 학교행사 중 이외에 학교시설내에 있는 동안][과외활동 (클럽활동) 중][특약가입자의 통학중 · 학교시설 등 상호간의 이동 중]	1,000 만엔

(2) 후유장해보험금^(*) (사고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한 180일이내에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범위	지급보험금
[정규과정][학교행사 중]	정도에 따라 120 만엔 ~ 3,000 만엔
[정규과정, 학교행사 중 이외에 학교시설내에 있는 동안][과외활동 (클럽활동) 중][특약가입자의 통학중, 학교시설 등 상호간의 이동 중]	정도에 따라 60 만엔 ~ 1,500 만엔

(* 2)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중복 지급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의료보험금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입원 가산금

사고발생 시 활동의 종류			치료일수 ^(*)3)	의료보험금
정규과정 중 · 학교행사 중	(대상에서 제외)	(대상에서 제외) 학교시설 내외와 상관없이 과외활동(클럽활동) 중	1일 ~ 3일	3,000 엔
			4일 ~ 6일	6,000 엔
			7일 ~ 13일	15,000 엔
			14일 ~ 29일	30,000 엔
			30일 ~ 59일	50,000 엔
			60일 ~ 89일	80,000 엔
			90일 ~ 119일	110,000 엔
			120일 ~ 149일	140,000 엔
			150일 ~ 179일	170,000 엔
			180일 ~ 269일	200,000 엔
			270일 ~	300,000 엔

입원한 경우

**입원가산금
(180일을 한도)**

**입원 1 일당
4,000엔**

**(활동 유형에 관계
없이 입원 1일째
부터 지급됩니다.)**

(* 3)

실제로 입원 또는 통원한 일수를 말합니다. 상해를 입고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치료 완료일’ 사이의 실제 치료기간으로 치료기간의 총 일수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십시오.

주의사항

- (1)상기 보험금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기타 상해보험, 가해자가 부담하는 배상금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2)보험금은 상기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2가지 이상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3)하루에 여러 병원에 통원해도 치료일수는 1일입니다. 예컨대 하루에 2개 병원에 통원해도 치료일수는 2일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4) 접촉감염예방 보험금 (*4)

보상범위	지급보험금
임상실습 중	한 사고당 15,000 엔(정액 지급)

(*) 임상실습 목적으로 사용된 시설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감염증 병원체에 접촉한 경우, 그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80 일 이내에 감염 예방조치를 받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3. 가입 수속

학교^(*)에 따라 특약 취급상황과 가입수속이 다르니 학교의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 학교교육법 등에 규정된 대학 등 중,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찬조회원인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다음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상해(부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 대상이 되는 분)·보험금 수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피보험자의 자살행위·범죄행위·투쟁행위, 무면 허운전·음주운전·마약 등의 영향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 뇌질환·질병·심신상실, 임신·출산·조산 또는 유산, 외과적 수술 등의 의료 처치(보험금이 지급되는 부상을 치료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지진·분화 또는 이에 의한 쓰나미(피보험자가 이러한 자연현상의 관측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을 제외합니다.), 전쟁·내란·폭동, 핵연료 물질의 유해한 특성 등에 인한 사고(피보험자가 핵연료 물질, 핵연료 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또는 이를 사용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구·실험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을 제외합니다.), 방사선 조사·방사능 오염(피보험자가 방사선 또는 방사능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구·실험활동에 종사하는 동안을 제외합니다.), 경부증후군, 요통 등으로 의학적 타각소견이 없는 것, 학교시설 밖의 과외 활동으로 실시하는 산악등반(피켈 등의 등산용구를 사용하는 것), 루지·봅슬레이·스카이다이빙·행글라이더 탑승 등 위험한 운동중의 사고, 학교시설 밖의 과외활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등 승용구에 의한 경기·시운전·경기장에서의 자유주행, 피보험자에 대한 형의 집행 등 또한, 음주에 의한 급성알코올 중독증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는 상해 등으로 급격·우연·외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고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 기타

고지 의무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통지 의무

가입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체없이 본 대학 담당창구(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에 해 주십시오.

- 주간부, 야간부 또는 통신부의 학부를 변경하는 경우
- 퇴학했을 경우(제적, 사망을 포함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통산 1년 이상 휴학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

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일시, 장소, 상황, 상해정도를 본 대학 창구에 신청한 후 창구에 비치된 사고통지 엽서, FAX, PC, 휴대단말 사고통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해서비스과에 통지해 주십시오.** 보험금 청구권에는 시효(3년)가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사망보험금 수취인 지정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보험회사가 경영파단한 경우 등의 취급에 대해

인수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반환금 등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이 파탄한 경우에 본 보험은 보험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보상 대상이 되며, 보험금, 반환금 등은 일정비율까지는 동기구에서 보상을 합니다. 동 기구의 보상비율은 이하와 같습니다.

· 보험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원칙상으로는 80% (파탄 보험회사의 지급정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할때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련한 보험금은 100%)

· 보험기간이 1년이상한 경우…원칙상으로는 90% (보험기간이 5년 이상으로 인수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한 시점에서 보험료 등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이 주무대신이 정한 기준 이율을 과거5년간 항상 초과한 경우는 90%를 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안내

보험 계약자인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는 본 계약과 관련된 가입자의 성명·학적번호·입금일 등의 개인정보를 인수보험회사에 제공합니다. 인수보험회사 및 인수보험회사 그룹 각사는 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험인수 판단, 본 계약의 관리와 이행, 부대 서비스 제공, 타 보험이나 금융상품 등 각종 상품·서비스 안내 및 제공, 설문조사 등을 위해 이용하고 아래 ①~⑥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이용·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의료 등 특별한 비공개 정보(민감 정보)의 이용 목적은 보험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의 적절한 운영 확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①본 계약에 관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처(보험대리점 포함), 보험중개인, 의료기관, 보험금 청구·지급에 관한 관계처,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②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을 판단할 때 참고로 타 보험회사, 일반사단법인 일본소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③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도쿄해상그룹 각사 또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제휴 기업 간의 상품·서비스 제공 및 안내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④재보험계약 체결, 갱신·관리, 재보험금 지급 등에 이용하기 위해 재보험 인수회사 등에 제공하는 경우

⑤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무 절차 및 담보권 관리·행사를 위해 그 담보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⑥갱신 계약에 관한 보험 인수의 판단 등, 계약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 대상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등(과거의 정보 포함)을 계약자 및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소속 학교가 작성한 가입자 명단을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에 제출한 것에 의해 제공됩니다.

이 취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본 보험에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본 [안내]는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의 내용에 관해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입 시 [중요사항 설명서]를 반드시 잘 읽어 주십시오.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홈페이지에 나열된 보험약관에 따르며, 불명료한 점이 있으시면, 본 대학 담당창구(학생과·학생지원과·보건센터 등)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가입 후에는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 가입자 안내서]를 읽어 주십시오.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와 이하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공동보험 계약으로,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가 다른 인수보험회사의 대리, 대행을 합니다. 각 인수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 결정하는 인수 비율에 따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 별개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인수 비율에 대해서는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확인해 주십시오.

아이오이닛세이동화 손포재팬 도쿄해상일동(간사보험회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

이 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동 협회 찬조회원 학교에 재적한 학생을 피보험자(보험 대상이 되는 분)로 하는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의 단체 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할 권리, 보험계약을 해약할 권리 등은 원칙으로 공의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가집니다.

<계약자>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학생지원부 학생보험과

우편번호 153-8503 도쿄도 메구로구 고마바 4-5-29

TEL : 03-5454-5275 URL : <http://www.jees.or.jp/>

〈인수간사보험회사〉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

자세한 내용은 협회HP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 가입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JEES 学研災

검색

중요사항설명서

(계약 개요 · 주의사항 정보의 설명)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계약개요 · 주의사항 정보의 설명

- 계약 개오는 가입하실 보험상품 내용의 이해를 돋기위해 특히 중요한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
- 주의사항 정보는 보험가입을 신청하실 경우에, 가입하시는 학생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등, 특히 주의해야 할 정보를 기재한 것입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 본 서면은 가입하신 보험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험약관 등에 따릅니다만,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동협회 또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에 문의하십시오.
(*)본 「안내」, 「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가입자 안내서 등 가입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개요

1. 상품의 구조 및 인수 조건 등

(1) 상품의 구조

이 보험은 공익재단법인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를 계약자로 하여 동 협회 찬조회원 학교에 재적한 학생을 피보험자(보험 대상이 되는 분)로 하는 단체 계약입니다. 보험증권을 청구할 권리, 보험계약을 해약할 권리 등은 원칙으로 동 협회가 가집니다.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1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2) 보상의 내용 · 보험기간 (보험의 계약기간)

①보험금을 지급하는 종류, ②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③보험기간 등에 대해서는 1-3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3) 인수조건 (보험금액 등)

본 보험의 인수조건(보험금액 등)은 미리 정해진 계약 타입이 됩니다. 계약코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2. 보험료 · 보험료 납부 방법

보험료는 가입하신 보험료분담금 적용구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2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보험료 납부 방법은 학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3. 만기환급금 · 계약자 배당금

본 보험에는 만기환급금 · 계약자 배당금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정보

1. 보상의 중복에 관한 주의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특약 등을 계약하실 때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보상 내용이 같은 타 보험(타 보험 특약과 당사 외 보험을 포함)을 계약하신 경우는 보상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보상이 중복되면 대상 사고에 대해 중복된 계약 모두 보상이 되지만, 어느 한쪽의 계약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 내용의 차이와 보험 금액을 확인하신 후 특약 등의 필요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계약에만 설정하면 향후 그 계약을 해약한 경우와 동거에서 별거로 변경해 피보험자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은 보상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2. 고지 의무 등

가입 시 인수보험회사에 중요한 사항^(*)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입 시 기재사항이 빠져있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는 계약이 해제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피보험자/보험 대상이 되는 분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집계 보고서의 기재사항이 빠져있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3. 가입 후의 유의사항 (통지 의무 등)

○퇴학 등을 할 때의 통지 의무와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3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통지와 절차 등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가입이 해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연락하신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집계 보고서 등에 기재된 통지 사항 내용이 변경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 신출한 보험료를 청구 또는 반환합니다.

4. 보험적용 개시일

(1) 4월 입학생의 보험책임은 4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됩니다. 단, 4월 1일 이후의 취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전원 가입의 경우: 교수회 등에서 결의^(*)한 보험 가입일이 4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②임의 가입의 경우: 학생이 재적한 회원학교에 대한 소정 보험료 납입일이 4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2) 9월 입학생의 보험책임은 9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됩니다. 단, 9월 1일 이후의 취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전원 가입의 경우: 교수회 등에서 결의^(*)한 보험 가입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②임의 가입의 경우: 학생이 재적한 회원학교에 대한 소정 보험료 납입일이 9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3) 10월 입학생의 보험책임은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됩니다. 단, 10월 1일 이후의 취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전원 가입의 경우: 교수회 등에서 결의^(*)한 보험 가입일이 10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②임의 가입의 경우: 학생이 재적한 회원학교에 대한 소정 보험료 납입일이 10월 1일 이후인 경우는 결의된 보험 가입일 오전 0시가 책임 개시 시점이 됩니다.

(*) 보험가입 일시는 결의 일시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등

3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6. 보험회사 파탄 시의 취급

인수보험회사의 경영이 파탄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반환금 등의 지급이 일정기간 동결되거나 금액이 삐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3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7. 공동보험에 대해

공동보험에 대해서는 3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8.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3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9.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한 해약

피보험자의 신청에 의거 그 피보험자와 관계된 가입의 해약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 등에 기재된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되는 가족분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대리인의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하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의 가족 중 인수보험회사 소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 등 기재된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대해 가족 여러분에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입 취소 · 무효 · 중대 사유로 인한 해제

○가입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취인에게 사기나 혐박 행위 사실이 있으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가입은 무효가 됩니다.

· 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할 목적 또는 타인에게 보험금을 불법으로 취득시킬 목적을 기진 경우.

· 사망 보험금 수취인을 지정할 때 그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그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는 가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동경 해상일동화재보험(주)에 보험 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령인이 폭력단 관계자 외에의 반 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관해 피보험자나 보험금 수취인에게 사기 행위가 있었던 경우

□ 보험금의 지급사유(학생교육연구재해상해보험, 통학증 등 상해위험보트약, 접촉감염 예방보험금 지급특약을 포함합니다), 지급하는 보험금

□ 보험 금액(계약금액)

□ 보험 기간(보험의 계약기간)

□ 보험료 · 보험료 납부방법

2. 중요사항설명서(계약개요 · 환기주의 정보)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셨습니까?

특히 「주의사항 정보」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된 경우 등」 학생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나 「보상의 중복에 관한 주의*」, 「고지 의무 · 통지의무 등」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예를 들어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특약을 계약하시는 분이 그 외 같은 종류의 계약을 하신 경우는 보상범위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주식회사 공무제 2부 문교공무실

우편번호 102-8014 도쿄도 지요다구 산방초 6 번지 4

TEL : 03-3515-4133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ADR 센터 (지정분쟁해결기관)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은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금융청 장관이 지정한 지정분쟁 해결 기관인 일반사단법인 일본손해보험협회와 수속 실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동 협회에 해결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협회 HP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sonpo.or.jp/>)

보험에 관한
의견 · 상담은

0570-022808 <통화료 유료>

지정 분쟁해결
기관

IP전화는 03-4332-5241을 이용해 주십시오.

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 15분~오후 5시

(토·일·국경일·연말연시는 휴무입니다.)

도쿄해상일동학교보험코너

0120-868-066 (수신자 부담 전화)

학교보험코너에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학교별 담당 학교보험코너에서 연락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시간: 평일 9:00~17:00 (토·일·국경일·연말연시 제외)